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 9. 6.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4. 9. 7.
- 상정일자 : 2004. 9. 14.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 산			금회추경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합 계	227,707,191	208,615,600	182,830,502	25,785,098	19,091,591
일반회계	189,519,857	170,428,266	149,847,546	20,580,720	19,091,591
특별회계	38,187,334	38,187,334	32,982,956	5,204,378	-
의료급여	35,843	35,843	27,750	8,093	-
주차장	38,151,491	38,151,491	32,955,206	5,196,285	-

※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 9.15%
 일반회계 11.20%

4. 추경재원 규모

[일반회계] : 19,091,591천원

- 조정교부금 추가분 : 19,091,591천원 (당초 교부액 28,626,782천원)

5. 세입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주차장)	
	회수	예산액	회수	예산액
2,892,141	10	2,892,141	-	-

6. 세출예산

○ 일반회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2	9,091,591	24	1,335,165	38	7,756,426

* 재원대비 투자사업비 비율 85.3%

○ 예비비 편성 : 10,000,000천원

○ 일반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합 계	189,519,857	170,428,266	19,091,591	100
의회운영위원회	2,105,297	2,071,086	34,211	1.1
시민행정위원회	164,558,386	148,461,918	16,096,468	86.8
재무건설위원회	22,856,174	19,895,262	2,960,912	12.1

○ 재무건설위원회의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경상비>	-----	1건	31,120
-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		31,120
<투자비>	-----	14건	2,908,242
- 인사동골목길 환경개선사업	-----		435,000
-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		230,000
- 송인근린공원 토지보상	-----		373,212
- 가로, 녹지대 꽃묘식재	-----		100,000
- 노점상밀집지역 대형화분 설치	-----		100,00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청구 보상	-----		100,000
- 충신동 198~170간 도로개설공사	-----		200,000
- 명륜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	-----		350,000
- 보도육교 정밀 안전진단	-----		100,000
- 창신동 582-6~536-1외 2개소	-----		200,000
- 송인동 178-82~178-111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		330,000
-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		80,000
- 소격동 55~삼청동 89-22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		260,000
- 관내 하수관로 CCTV 설치	-----		50,000

7.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277억 719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90억 9,159만 1천원이 증가(9.15%) 되었는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895억 1,985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0억 9,159만 1천원이 증가(11.20)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이 없습니다. 또한 세입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 28억 9,21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추경재원 규모

추경재원의 규모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0억 9,159만 1천원으로서 이는 서울시로부터 추가조정교부금 190억 9,159만 1천원을 교부 받은 재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228억 5,61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9억 6,091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 1,895억 1,985만 7천원의 12.1%를 점유하고 있는 바, 주요사항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매수 (91 쪽)

2001년 6월경 행촌동 210-829번지 사유지 (146.3m²)에 체육공원시설물(허리돌리기, 철봉, 장의자 등)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을 이전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동 부지를 매수하려고 이번 추경에 2억 3천만원을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령에 의하면 1억원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4. 9. 3일 공유재산심의회시 부지매수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향후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송인근린공원 토지보상 (92 쪽)

송인동 58-363번지의 2필지 (365.9m²)의 매수청구가 신청된 송인근린공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3억 7,324만 2천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垓)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인근린공원조성 사업은

1977. 7. 9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반복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추경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현재 사유지 보상대상은 총 4,184㎡ 중 대지 2,174㎡, 임야 1,877㎡, 기타 124㎡로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93 쪽)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 4억 3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인사동, 관훈동, 경운동, 견지동 일대 122,200㎡에 대한 골목길 포장개선사업, 전신주 등 지중화 및 이설사업비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비 50%, 구비 50%의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이며, 연도별 투자률 보면, 총사업비는 2,610백만원으로서 2004년도 870백만원, 2005년도 1,052백만원, 2006년도 68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노점상 밀집지역 대형목재화분 설치 (126 쪽)

노점상 밀집지역 대형목재화분 설치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노점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시민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탑골공원앞 40개소, 이대병원후문에서 지하철1호선 동대문입구간 왕산로 40개소, 인사동 및 대학로 20개소 등 총 100개를 설치하려는 것인 바, 목재로 설치하였을 경우 내구연한의 검토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95 쪽)

관내 13년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5개소(서울예고앞, 세검, 평창동, 신설, 내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육교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안전성을 파악하여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으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가 이용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또한 도시미관정비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것이 현재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와 철거여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지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8.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